

법인세율 변화기간의 연도별 BTD 분석

박수경^{1*}, 가예²

¹경남도립 남해대학 금융회계사무과 강사, ²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BTD Analysis around Corporate Tax Rate Changes

Su-Gyeong Park^{1*}, Jia Rui²

¹Lecturer, Department of Finance·Accounting·office Work, Gyeongnam Namhae University

²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및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시점을 전·후한 기업의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연도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 검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많았으며 2008년도의 BTD가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시의 회계이익은 과세소득보다 적었으며 2017년도의 BTD 역시 다른 연도와 유의적으로 달랐다. 즉, 법인세율 변화 시 기업은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변화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도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하, 회계이익, 과세소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nnual difference of firm's book income, taxable income and BTD that before and after the 2009 corporate tax rate cut and 2018 corporate tax rate increase.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item by year, and post hoc was performed after homogeneity test of varianc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ok income at corporate tax rate cut was higher than taxable income, and BTD in 2008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years. Second, the book income at corporate tax rate increase was less than taxable income, and BTD in 2017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years. In other words, the firm is performing appropriate profit adjustments to reduce of tax burden when the corporate tax rate changes. Because of this, the BTD in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change is different from other years.

Key Words : Corporate tax rate increase, Corporate tax rate cut, Book income, Taxable Income, Book-Tax Difference(BTD)

1. 서론

법인세율 인하의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였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를 실시하였다.

그로부터 10년 후, 2018년 현 정부에서는 기존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법인세율의 인상이 경제적으로 어

*This paper is a modification and supplement of a small part of the authorial doctoral dissertation (2019)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Su-Gyeong Park(dorozor@daum.net)

한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전략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성(기업의 영속성)을 추구한다. 기업에게 법인세를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익조정이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인세를 변화와 관련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한다면 단순히 회계이익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도 조정이 되어야 하므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이익의 조정이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세를 변화 전·후의 연도별 회계이익, 과세소득, 회계이익-과세소득차이(이하 BTD)를 비교분석하여 법인세를 변화에 따른 연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검증한다.

이를 통하여 법인세율이 변화할 때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이익조정 수행 여부를 알 수 있고 법인세율 인상·인하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에 대한 전략을 파악함으로써 법인세율 개편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수인 반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희소하며, 특히 국내 선행연구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2. 선행연구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회계이익은 증가시키면서도,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과세소득은 증가시키지 않거나 감소시키려 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BTD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9-11].

Manzon and Plesko[8]에 의하면 1993년 까지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컸으나, 1994년부터는 당기순이익 과세소득을 급격하게 초과한 것을 발견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Mills et al.[12]은 세전 순이익이 음(-)인 기업들이 BTD가 더 작다고 주장하였다.

Hanlon et al.[1]은 1985~2003년 까지 미국 기업들의 BTD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소득보다 큰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정운오 등[3]이 Hanlon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가치 지향 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

의 괴리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주인기 등[6]과 정미화 등[2]의 연구에서는 BTD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유용한 대용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법인세율 인하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발생액 관련 변수를 이익조정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으나 [13-15], 근래에는 BTD가 유용한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익조정의 탐지에서 발생액 변수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4-7]. 따라서 법인세율 변화 전년도에 기업의 회계이익 변경 여부를 파악하는데 BTD가 발생액 대용치보다 적합한 면이 있다.

3. 연구방법

법인세율 인하 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이익조정의 탐지에서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전규안·박종일 2002; 정미화·노현섭 2007). 보편적으로 경영자에게 장부이익은 높게 보고하고, 과세소득은 낮게 보고하여 세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면 법인세율 인하 시 BTD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시에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차기기의 이익의 이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당기에 이익을 조기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주에게 보고되는 장부이익 과대 계상 목적에 부합되므로 법인세율 인상 시 BTD는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기업의 BTD는 법인세율 변화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회계이익, 과세소득, BTD 각 항목에 대하여 One-way anova를 수행하고, 등분산의 가정 기각 여부에 따라 다중비교 및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BTD에 대한 계산은 송호신·전봉걸[16]의 연구방법을 따르며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text{년도 추정 법인세부담액} \\ & = 't\text{년도 법인세비용} \\ & - ['t\text{년도 이연법인세부채} - 't-1\text{년도 이연법인세부채}] \end{aligned} \quad (1)$$

+ ['t'년도 이연법인세자산 - 't-1'년도 이연법인세자산]

$$\begin{aligned} & \text{'t'년도 지방소득세 제외 법인세부담액} (\hat{T}_{NW,t}(2)) \\ & = \text{'t'년도 추정 법인세 부담액} \times \frac{100}{110} \end{aligned} \quad (2)$$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에는 통상적으로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는 과정이 식 (2)라고 할 수 있다. 't'년도 추정 법인세 납부액은 실제 법인세 납부액보다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수 있으며, 마이너스 값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정 법인세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at{T}_t = \max(0, \hat{T}_{NW,t}(2)) \quad (3)$$

상기와 같이 계산된 추정 법인세 납부액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한다. 법인세는 기준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2개의 세율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2억 원 이하 구간을 kL%, 2억 원 초과 구간을 kH% 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begin{aligned} \hat{T}_t = & (k_L \min\{\hat{TB}_t, TB_{thresh}\} \\ & + k_H[\hat{TB}_t - TB_{thresh}]I(\hat{TB}_t > TB_{thresh}) - E) \end{aligned} \quad (4)$$

여기서, I(•)는 지시함수, E는 세액공제·감면세액 등이다. 실제 재무자료에는 세액공제 등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E=0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hat{TB}_t = \begin{cases} \hat{T}_{NW,t}/k_L & \text{if } \hat{T}_{NW,t}/k_L \leq TB_{thresh} \\ TB_{thresh} + (\hat{T}_{NW,t} - TB_{thresh} \times k_L)/k_H & \text{if } TB_{thresh} < \hat{T}_{NW,t}/k_L \leq TB_{thresh} \end{cases} \quad (8)$$

상기의 방법으로 추정된 과세소득을 회계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두 금액간의 차액을 계산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TD_t = \text{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_t - \text{과세소득 추정액}_t \quad (9)$$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의 집단은 각 연도이며, 독립변수는 과세소득, 회계이익, LTD이다. 먼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각 연도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과세소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Table 1>의 <Panel A>는 각 연도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며, 유의수준 1%내에서 연도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과세소득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므로, 과세소득의 과소 계상이 예상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의 Panel B를 보면 2008년의 과세소득이 2007년, 2009년의 과세소득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검정의 전제는 각 연도 간의 분산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Table 1의 Panel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evene's test가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각 집단 간 등분산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집단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amhan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의 Panel C에 제시한다. 집단간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경우, 2008년도의 과세소득이 2007년 및 2009년의 과세소득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더 적은 것을 발견하였다.

세전 당기순이익의 연도별 차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세전 당기순이익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역시 과세소득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전년도인 2008년이 일부 다른 연도들에 비하여 세전 당기순이익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과세소득과 세전 당기순이익의 일원분산분석 결과의 의미는 법인세율이 인하되기 직전 연도에 과세소득의 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다는 것이다. 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법인세율 인하 전년도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율 인하 연도로 이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전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비하여 선

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경영자가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는 장부이익을 과소 계상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연도로 이익을 이연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경영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정미화·노현섭(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경영자가 방부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경우, 자본시장으로부터 이익조정 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세금비용의 부담이 커지므로 장부이익을 높게 보고하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은 BTD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연도별 BTD의 평균값은 전제 음수로 세전 당기순이익에서 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되는 BTD가 음수라는 의미는 기업들이 보고한 장부이익보다 세무조정을 통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이 모든 연도에서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BTD는 각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법인세율 인하 전년도(2008년)와 법인세율 인하 연도(2009년)의 BTD가 유의수준 1% 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Results of one-way ANOVA of tax bases for each year : 2005~2009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TAX BASE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05	0.0638	0.0034	7.793***	11.901***
2006	0.0771	0.0035		
2007	0.0820	0.0037		
2008	0.0631	0.0030		
2009	0.0843	0.0040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TAX BASE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007	1.000
	2006	-0.0140	0.109
	2007	-0.0189	0.007
	2009	-0.0212	0.001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TAX BASE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007	1.000
	2006	-0.0140	0.028
	2007	-0.0189	0.001
	2009	-0.0212	0.000

Table 2. Results of one-way ANOVA of Pre-tax net income for each year : 2005~2009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Pre-tax NI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05	0.0522	0.0041	3.510***	5.060***
2006	0.0350	0.0071		
2007	0.0502	0.0039		
2008	0.0417	0.0048		
2009	0.0225	0.006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Pre-tax NI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105	0.754
	2006	0.0066	0.943
	2007	-0.0085	0.865
	2009	0.0191	0.169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Pre-tax NI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105	0.634
	2006	0.0066	0.997
	2007	-0.0085	0.841
	2009	0.0191	0.139

Table 3. Results of one-way ANOVA of BTD for each year : 2005~2009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BTD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05	-0.0115	0.0040	13.553***	2.769**
2006	-0.0419	0.0072		
2007	-0.0317	0.0034		
2008	-0.0213	0.0047		
2009	-0.0617	0.0058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BTD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098	0.783
	2006	0.0205	0.105
	2007	0.0103	0.742
	2009	0.0403	0.000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BTD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08	2005	-0.0098	0.702
	2006	0.0205	0.169
	2007	0.0103	0.560
	2009	0.0403	0.000

다음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과세소득 및 세전 당기순이익의 차이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의 Panel A는 법인세율 인상 전년도 및 이전 3년과 인하 직후 연도의 과세소득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평균값에서 법인세율 인상 전년도인 2017년도가 다른 연도들에 비하여 경미하게 높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Panel B에서 Scheffe의 사후검증을 수행하여 2017년과 각각의 연도들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집단 간의 차이는 특이점이 없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5개 집단간의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지 않아 추가적인 사후검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Table 4. Results of one-way ANOVA of tax bases for each year : 2014~2018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TAX BASE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14	0.0586	0.0068	0.432	1.010
2015	0.0614	0.0107		
2016	0.0541	0.0112		
2017	0.0718	0.0100		
2018	0.0663	0.0124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TAX BASE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0132	0.938
	2015	0.0104	0.974
	2016	0.0177	0.836
	2017		
	2018	0.0055	0.998

Table 5. Results of one-way ANOVA of Pre-tax net income for each year : 2014~2018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Pre-tax NI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14	0.2149	0.1224	3.230**	10.244***
2015	0.8888	0.0262		
2016	0.0673	0.0078		
2017	0.3899	0.1196		
2018	0.0672	0.0101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Pre-tax NI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1749	0.638
	2015	0.3010	0.114
	2016	0.3226	0.073
	2018	0.3226	0.073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Pre-tax NI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1749	0.975
	2015	0.3010	0.149
	2016	0.3226	0.084
	2018	0.3226	0.084

Table 6. Results of one-way ANOVA of LTD for each year : 2014~2018

Panel A. Average difference analysis by year

BTD	Mean	Std. Err.	F-value	Levene's test
2014	0.1562	0.1220	3.228**	11.025***
2015	0.0273	0.0265		
2016	0.0132	0.0092		
2017	0.3339	0.1236		
2018	0.0009	0.0098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Two-tailed tests).

Panel B.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by year

BTD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1776	0.638
	2015	0.3065	0.112
	2016	0.3207	0.084
	2018	0.3329	0.065

Panel C. Tamhane's post hoc test by year

BTD		Mean-difference (I)-(J)	P-value
year(I)	year(J)		
2017	2014	0.1776	0.975
	2015	0.3065	0.162
	2016	0.3207	0.109
	2018	0.3329	0.085

Table 5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일원분산분석 결과이다. <Panel A>는 각 연도 간에 세전 당기순이익의 평균에 대한 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이며 유의수준 1% 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상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Panel B>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이 2016년 및 2018년도에 비하여 10% 유의수준에서 세전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Panel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Tamhan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Panel C>에 제시하였다. 등분산의 가정하는 <Panel B>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Panel C>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법

인세율이 인상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이 인상되기 전년도에 세전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6은 BTD의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법인세율 인상 전년도인 2017년이 다른 연도들에 비하여 과세소득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 각 연도들 사이에 BTD 평균에 대한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집단 간 등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Tamhane의 사후분석에서 법인세율 인상 전년도가 법인세율 인상 적용 연도에 비하여 BTD의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전제적인 분석결과 법인세율 인하 기간을 전·후하여서는 평균적으로 회계이익이 과세소득에 비하여 그 금액이 더 적었고, 법인세율 인상 기간을 전·후하여서는 평균적으로 회계이익이 과세소득에 비하여 그 금액이 더 많았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 시, 세율이 인하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위하여 회계이익을 축소하는 하향 이익 조정의 수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되고 결국 법인세율 인하 직전 연도의 BTD가 다른 연도의 BTD와 비교하여 통계적 차이를 갖게 된다.

법인세율 인상 시에는, 세율이 인상되는 차기로의 이익의 이연을 방지하고 이익을 조기인식하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 수행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법인세율 인상 직전 연도의 BTD는 다른 연의 BTD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변화 시점의 BTD가 법인세율 적용 시점의 BTD와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분석함으로써, 법인세율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상반적인 이익조정 수행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는 점에 공헌점이 있다. 또한 국내에 선행연구가 전무한 법인세율 인상시 BTD의 현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기업이 법인세율 변화시에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수행한다는 것을 연도별 차이를 통하여 밝힘으로써, 향후 정부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 단순히 법인세율의 조정이 아닌 세부적인 공제혜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BTD의 연도별 차이를 통하여 법인세율

변화시 기업의 연도별 BTD도 다르다는 것을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율 변화와 BTD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이익조정 대리변수와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법인세율 변화와 이익조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Hanlon, S. K. Laplante & T. Shevlin. (2005). Evidence for the possible information loss of conforming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8(2), 407-442.
- [2] M. H. Jung, Y. W. Lee & H. S. Roh. (2008). Usefulness of Book-Tax Differences as a Metric for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a Los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3(2), 69-92.
- [3] W. O. Jung, J. K. Ko, K. S. Kim & H. C. Roh. (2006). Book-Tax Difference of Korean Firms Examined Using Actual Tax-Reconciliation Data. *Korean accounting review* 31(4), 203-238.
- [4] K. A. Jeon & J. I. Park. (2002). Deferred taxes and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27(1), 107-135.
- [5] M. H. Jung & H. S. Roh. (2007). A Theoretical Review on Usefulness of Book-Tax Differences as a Metric for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47(1), 327-350.
- [6] I. K. Joo, W. W. Choi & J. I. Yum. (2005). A Study on the Usefulness of Book-Tax Differences as a Metric for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30(2), 237-275.
- [7] J. D. Phillips, M. P. Pincus & S. O.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2), 491-521.
- [8] G. B. Manzon & G. A. Plesko. (2002).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easures of income. *Tax law review* 55(2), 175-214.
- [9] L. F. Mills. (1998). Book-tax differences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2), 343-356.
- [10] L. F. Mills & R. C. Sansing. (2000). Strategic tax and financial reporting decision: Theory and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7(1), 85 - 106.

- [11] L. F. Mills & K. J. Newberry. (2001). The influence of tax and non - tax costs on book - tax reporting difference : Public and private firm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1), 1 - 19.
- [12] L. F. Mills, K. J. Newberry & W. B. Trautman. (2002). Trends in book-tax income and balance sheet differences. *Tax notes* 96(8).
- [13] K. H. Kim & J. I. Park. (2003). Earnings Management Patterns in Response to Tax Rate Reductions. *Korean accounting review* 28(3), 85-120.
- [14] C. R. Park & S. M. Kim. (1996). Corporate tax rate cut and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21(4), 143-175.
- [15] S. M. Shin. (2002). Research Papers : An Empirical Study on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Reductions.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19(2), 7-34.
- [16] H. S. Song & B. G. Chun. (2011).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corporate tax burden and ta base using firm level data, and the effect of corporate ta burden on firm's investment behavior.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박 수 경(Su-Gyeong Park)

[정회원]



- 2011년 8월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9년 8월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경영학박사)
- 2018년 3월~현재 : 경남도립 남해대학 시간강사

- 관심분야 : CSR, LTD, 기업실패, 조세회피
- E-Mail : dorozor@daum.net

가 예(Jia Rui)

[정회원]



- 2015년 12월 : 중국 사천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공학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CSR, 기업지배구조, 이익조정
- E-Mail : jiarui@naver.com